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 합니다.

2023. 10. 23.(월) 09:30  
제29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봉 규

#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과

- 발의년월일: 2023. 10. 11.
- 발 의 자: 김지훈(민) 의원 등 11인

## 2. 제안이유

- 상위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및 「2023년도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함

## 3. 주요내용

-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안 제12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연가가산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
- 나.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확대(안 제14조제3항)
  - 「2023년도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재직기간 구간별 휴가 사용 분할 횟수 확대
- 다.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 조항 신설 (안 제17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및 저축 근거 규정 마련
- 라.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변경(안 제14조제1항 관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일수 지정(15일)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3. 10. 11.(7일간)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각종 연가 지정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확대 규정하고, 다태아 출산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일수를 지정하는 등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 배우자출산휴가일수 지정,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및 저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2023년도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단체 협약」에서 재직기간 구간별 휴가 사용 분할 횟수 확대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었으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저출산시대 공무원의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다태아 출산의 휴가 일수가 추가되는 등 지방공무원의 권리 신장과 더불어 국가인구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조공선